동호회 운영지침

제정 2009. 8. 17.

전면개정 2011. 7. 21.

개정 2013. 9. 1.

개정 2014. 2. 20.

개정 2016. 6. 1.

개정 2017. 4. 13.

개정 2020. 1.31.

개정 2022. 12. 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동호회 활동의 운영 및 지원을 통하여 직원의 근무능력향상, 체력증진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동호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동호회"라 함은 진흥원 내에서 교양, 예술, 취미, 체력증진, 연구조사, 문화 활동 등 공통적인 분야의 취미를 같이 하는 직원들이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4.2.20.>
- ② "회원"이란 동호회에 참여하는 진흥원 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2.12.23.>
- ③ "주무부서"란 동호회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복리후생 담당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2.12.23.>
- ④ "운영위원회"란 동호회의 등록·폐지, 운영계획 등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신설 2022.12.23.>
- 제4조(주무부서 역할) ① 주무부서는 진흥원 내 동호회 운영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며, 각 동호회의 등록 및 기관 지원 사항을 검토·승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지원이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6.6.1>
 - 1. 기존 동호회와 유사한 동호회(다만, 활동 지역이 다를 경우 중복 허용) <개정 2022.12.23.>
 - 2. 식사만 하는 단순친목 동호회
 - ② 주무부서는 동호회 행사계획이 기관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동호회 활동을 중 단 또는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6.1>
 - ③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6.1>
 - 1. 회원구성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개정 2022.12.23.>
 - 2. 활동내용이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활동이 미흡한 경우
 - 3.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

제5조(동호회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원 상호간의 상호존중과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금한다. <개정 2022.12.23.>

- ② 회원은 이용시설 및 장비를 아껴 쓰고 보존한다.<개정 2022.12.23.>
- ③ 회원은 동호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개정 2022.12.23.>
- ④ 동호회의 회장은 동호회의 행사일정 및 운영방안 및 동호회별 모임 일정 등을 정기적으로 공지한다. <개정 2022.12.23.>
- ⑤ 동호회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에 활동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진홍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할 수 있다.
- ⑥ 동호회의 회장은 동호회의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진다.<개정 2022.1 2.23.>
- ⑦ 동호회의 회장은 신규 회원 가입 및 탈퇴자 발생 시 10일 이내에 회원 가입(탈퇴) 상황을 주무부서 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 ⑧ 동호회의 회장은 동호회별 활동비 사용 내역에 관한 주무부서의 요구가 있을시 관련 증빙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동호회 등록기준) ① 동호회를 신규 및 재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제출하여 주무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1>

- 1. 동호회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 2. 회칙 및 회원명단
- ② 동호회의 회원자격은 진흥원에 근무하는 전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6.6.1>
- ③ 동호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
- 1. 각 동호회는 회장 1명, 총무 1명의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4.13.>
- 2. 회원구성은 부서, 직급, 연령 및 입사동기 등으로 편중되지 말아야 한다.
- 3. 회원수는 최소 15명 이상이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단, 2개월까지 회원 20명 이상 미확보 시는 자동 취소될 수 있다.

제7조(동호회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동호회 운영 활성화 및 동호회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제1항의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 1. 동호회 평가 기준 등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 2. 동호회 활동 지원 및 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
- 3. 동호회 해산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 4. 동호회 운영 평가점수를 통한 우수동호회 선정에 관한 사항
- 5. 동호회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6. 기타 동호회 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부서, 연령, 성별 등 다양한 직원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은 동호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의 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 ③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무부서 직원 중 간사를 둔다. <개정 2022.12.23.>
- 제7조의2(동호회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등) ① 주무부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고자 하는 안 건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22.12.23.>
 - ② 회의소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개최일시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최전일까지 통지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20.1.31.>
- 제7조의3(기밀유지) 운영위원회에 관여한 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 중 기밀을 요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
- 제8조(동호회 지원) ①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단, 진흥원은 동호회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지침에 의거 자체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관리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 2.12.23.>
 - 1. 기본활동비 : 정기적인 활동실적이 있는 동호회를 대상으로 회원 수, 회원참여도,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1/4분기에 지급<신설 2022.12.23.>
 - 2. 우수활동비 : 기본활동비를 신청한 동호회 중에서 [별표 제1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동호회 운영 위원회가 평가를 통해 우수동호회를 선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신설 2022.12.23.>
 - ② 각 동호회의 회장은 매월(1~31일) 실시한 활동내용 및 증빙서류를 포함한 동호회 활동결과보고 서를 작성하여 12월 1일까지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 ③ 지원금은 동호회의 회장과 회원 간의 동의하에 동호회 회장 또는 총무 통장계좌에 1/4분기에 지급한다. <개정 2022.12.23.>
 - ④ 지원금은 동호회 활동 및 운영(강사초청비, 교재구입비, 입장료 및 단체참가비, 단체 활동에 부수한 경우에 한한 식대)에 사용되는 예산을 말한다.
 - ⑤ 지원금은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공동경비에 대하여 지급하고, 동호회 활동과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2.23.>
 -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동호회는 주무부서에서 동호회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1. 2개월까지 회원 20명 이상 미확보 시

- 2. 특정사유 없이 동호회 활동이 정체되거나 동호회 지원금 사용내역이 불건전 또는 불투명한 경우
- 3. 기타 기관의 경영방침에 부적합하거나 지원금 지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⑦ 해당 동호회는 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 적격한 증빙서류(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부 칙<2009. 8. 17.>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7. 21.>

이 지침은 경영기획실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 1.>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20.>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 1.>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4. 13.>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 31.>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23.>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동호회 평가기준표

□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내용				
평가항목(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활동목적 및 운영의 적합성(40점)	40	30	20	10	0
2. 식비·활동비 사용비율(20점)	20		10		0
	활동비 20% 이상		활동비 20% 미만		
3. 활동계획 및 결과게시(5점) * 키사랑 그룹웨어 게시물 기준	5	4	3	2	0
	5회 이상	3~4호	2회	1호	0회
4. 활동실적(20점)	20	15	10	5	0
	5회 이상	3~4호	2호	1회	0회
5. 실제 참석 인원수 평균 비율(15점)	15		8		0
	40% 이상		40% 미만		10% 미만
(가점) 지역 및 타기관 연계활동(15점)	활동실적별 건당 5점 가점(최대 15점)				

동호회 등록신청서

모 임 명		회 장 명				
활동목적		회원수				
정기모임	회/월	월 회 비				
특기사항						
바랍니	: 회칙 및 회원명부 각 1부	20 년 ⁻				

주	담	당	팀	장	단	장
무부						
서						